

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13.2.23>

고객번호
1009-1601-0412-2

검사 신청서

※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관리번호:133-219)

접수번호	접수일자	① 처리기간 완성검사, 수시검사 : 15일 정기검사, 정밀안전검사 : 20일
상호(건물명) 도시철도공사본사사옥	대표자 성명 김태호	
검사의 종류 완성검사 [], 정기검사 [√], 수시검사 [], 정밀안전검사 []		
생년월일	사업자등록번호 218-82-00999	
사무소 소재지 (133-783)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, 도시철도공사본사사옥 (용답동)	사무소 전화번호 (02)6311-2154	
승강기 소재지 (133-783)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(용답동)	전화번호 (02)6311-2154	

검사대상 승강기	승강기의 종류		층수/길이	수량	제조업체	유지관리업체	유효기간 만료일	검사희망일
	형식	용도						
검사대상 승강기	전기식	승객용(승객용)	총 10 층	총 2 대		승우엘리베이터(주)	2016.01.04	
	전기식	화물용(화물용)	총 12 층	총 1 대		승우엘리베이터(주)	2016.01.04	

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제1항,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검사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인 **시기철** 도시철도공사본사사옥 (서명 또는 인) **시기철**
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귀하 **16년 1월 6일**

첨부서류	○ 완성 또는 수시검사 신청 시 가. 검사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1부 나.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부품의 목록(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) 1부 다.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서류	수수료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9에서 규정한 금액 (동봉된 지로용지 참조)
------	---	--

유의사항
 검사기관은 ①번의 처리기간까지 검사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신청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까지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.



※ 검사일자는 추후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

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:

※ 승강기 검사수수료 입금 확인 후 검사접수 처리되며, 검사신청서 제출시 고객(공급받는자)님의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해 드립니다.

※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님의 기밀을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, 고객님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는 고객님의 양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타 검사기관, 주무관청, 해당 지방자치단체, 당해 승강기(또는 기계식주차장)의 제조사 또는 보수사에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